

의정부지방법원 2015. 10. 22 선고 2015나1971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재판경과

의정부지방법원 2015. 10. 22 선고 2015나1971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2015. 1. 28 선고 2013가단37715 판결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, 피항소인A

피고, 항소인1. B

2. C

3. D

변론 종결 2015. 7. 16.

판결 선고 2015. 10. 22.

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5. 1. 28. 선고 2013가단37715 판결

주 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 E에게,

가.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ㄱ' 부분 93㎡ 지상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93㎡를 철거하고, 위 'ㄱ' 부분 93㎡을 인도하며, 96,600원 및 2014. 1. 1.부터 위 'ㄱ' 부분 93㎡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9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나. 피고 C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8, 9, 10, 11, 12, 13, 14,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ㄴ' 부분 62㎡ 지상 시멘트부력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62㎡를 철거하고, 위 'ㄴ' 부분 62㎡을 인도하며, 64,400원 및 2014. 1. 1.부터 위 'ㄴ' 부분 62㎡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다. 피고 D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5, 16, 17, 18,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ㄷ' 부분 24㎡ 지상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24㎡를 철거하고, 위 'ㄷ' 부분 24㎡을 인도하며, 2013. 6. 21.부터 위 'ㄷ' 부분 24㎡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 E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의 가.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고,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 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

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【가.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 중 L이 소유하고 있던 1/2 지분은 1978. 3. 20.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M에게 3/10, N에게 2/10 이전되었고, 이어서 1978. 6. 2.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, P에게 각 1/4 지분씩 이전되었고, 이어서 1980. 7. 18.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Q와 피고 C, 피고 D에게 각 1/6 지분씩 이전되었고, 이어서 2001. 2. 20. Q의 위 1/6 지분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에게 이전되었다.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중 J가 소유하고 있던 1/2 지분은 2009. 10. 14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R, F에게 각 1.65/10 지분이, G에게 1.7/10 지분이 이전되었다가, 이어서 2009. 12. 11.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R의 1.65/10 지분이 원고(선정당사자)에게 이전되었다. 원고(선정당사자)는 2013. 2. 12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는데,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(선정당사자)는 25.05/60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였고, 선정자 E은 원고(선정당사자)의 지분에서 33/400 지분을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25.05/60 지분과 33/400 지분을 취득하여, 원고(선정당사자)와 선정자 E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/2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.】

2. 추가판단사항

가. 피고들의 주장 요지

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건물이 존재하는 대지 부분을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, 경매절차에 의하여 그 대지 부분의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귀속된 것이므로, 피고들은 위 각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.

나. 판단

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,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·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,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(대법원

2009. 3. 26. 선고 2008다44313 판결).

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, ①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고 지상에 각 건물을 신축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가 계속 변경된 점, ②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 사이에 구분소유에 관한 어떠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, ③ 이 사건 부동산 중 'ㄱ', 'ㄴ', 'ㄷ' 부분 외의 토지의 형상이 이를 별도로 사용·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, 피고들 외의 나머지 공유자들이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·수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들과 다른 공유자들 사이에 위 각 건물을 신축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.

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 E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김성곤

판사한혜윤

판사전선주

별지